영유아 보육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보육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1
1. 영유아 보육제도 4
1.1. 영유아 보육의 개념 4
1.1.1. 영유아 보육의 개념 4
2. 어린이집 이용 6
2.1. 어린이집의 종류 및 운영 6
2.1.1.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6
2.1.2.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운영 7
2.2. 어린이집의 관리 11
2.2.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1
2.2.2. 영양관리 12
2.2.3. 위생관리 14
2.2.4. 안전관리 16
2.2.5. 어린이집 평가 등 21
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3
2.3.1.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23
2.3.2.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28
3. 영유아 보육 지원 30
3.1. 양육수당 30
3.1.1. 양육수당 30
3.2. 일시보육 서비스 31
3.2.1. 시간제보육 서비스 31
3.3.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2
3.3.1.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2
3.4. 육아 근로 지원 35
3.4.1. 육아휴직 등 35
3.4.2. 근로시간 단축 등 40
3.5. 세제 혜택 43
3.5.1.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43
3.6. 다자녀 가구 지원 45
3.6.1.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45
3.6.2.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46

1. 영유아 보육제도

1.1. 영유아 보육의 개념

1.1.1.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의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이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의 이념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육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항·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③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④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⑥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⑦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⑧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⑨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s://central.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5항).

보육과정

보육과정

▪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는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1항).

표준보육과정

▪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

>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유아교육

유아교육

▪ "유아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유아교육 대상

▪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의 관계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① 각각 반일반 중심이라는 점과 종일반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② 유아의 교육서비스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① 교육부 소관이라는 점, ② 대상에 만 3~5세까지의 어린이가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③ 유아교육이든 영유아보육이든 사회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운영됩니다.

> ※ 유아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이용

2.1. 어린이집의 종류 및 운영

2.1.1.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어린이집 이용 대상

▪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및 제2조제1호).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

▪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의2나목).

민간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운영

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 ※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시간제보육 서비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및 제6항).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특별활동프로그램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단서).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내용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1.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은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이란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으로 오인하도록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1호).

보육대상 및 반편성

▪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

▹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단서].

▪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별로 반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3)].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보육시간

▪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제1항).

▹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하루 7시간 이하의 보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3)].

▹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1)].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2)].

놀이터 설치·운영

▪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 다만,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 어린이집은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

※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50-6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제6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제1항).

2.2. 어린이집의 관리

2.2.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건강관리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단서).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4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응급조치

응급의료기관 이송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응급조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차)①].

2.2.2. 영양관리

급식관리

어린이집의 급식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

▪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함)를 두고 있지 않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급식소의 등록

▪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및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및 제2호).

▪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영양사 및 조리원 고용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

※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사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어린이집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

조리실 운영

조리실의 운영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기관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나)①].

▪ 식기는 소독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나)②].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나)③].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4)나)④].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의8).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다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 10 제2호가목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위반사실 공표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1항).

2.2.3. 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3)].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의 청결상태 및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1)].

먹는물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동물 관리

▪ 어린이집에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4)].

환경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5)].

▪ 연면적 430제곱미터(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및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

위반시 제재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 및 제4호의9).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1항).

2.2.4. 안전관리

안전관리

위험발생 요인 사전제거

▪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1)].

시설물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않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2)].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3)].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5)].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6)].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가목4)].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교육하게 할 수 있음),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 안전교육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1),2)].

▪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제2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3)].

차량안전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차량의 신고

▪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함)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1)].

>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
>
>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튜닝 승인을 받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포함)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
-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 좌석 규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치미터 이상일 것
-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부칙 제2조].

▪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조발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 보조발판 등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할 때에 조작, 점멸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점멸등과 같은 표시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가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제2호저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이를 위반하여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제2호저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4).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동승 보호자의 의무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4)].

▪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7)].

안전조치의 이행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3)].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5)].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라목6)].

아동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 준수 및 안전 운행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2.2.5. 어린이집 평가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 실시

▪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4호).

▪ 지원 및 평가 결과의 공표

▪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제3항).

▪ 평가등급

▪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 평가 결과의 공표

▪ 평가 결과는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

▪ 평가 결과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표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

1.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평가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평가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지표

▪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보육환경
- 보육과정 운영
-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https://www.kice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6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3.1.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만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0~2세반 보육료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2026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쪽).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4. 1. 1. ~ 2024. 12. 31.
2세반	2023. 1. 1. ~ 2023. 12. 31.
3세반	2022. 1. 1. ~ 2022. 12. 31.
4세반	2021. 1. 1. ~ 2021. 12. 31.
5세반	2020. 1. 1. ~ 20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9. 1. 1. ~ 2013. 12. 31.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쪽).

(단위: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만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만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만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연장 보육료

지원대상

-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82쪽).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함

지원 금액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

(단위: 원)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교육』의 <유치원 교육-유치원 교육비-유치원 교육비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5쪽).

지원 금액

-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8쪽).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634,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09쪽).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됨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1쪽).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 금액

▪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1-312쪽).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음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월 100,000원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 통보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쪽).



<출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57쪽>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6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6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5:30~07:30분 사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316쪽).

> ※ 2026년 3월 이용실적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는 폐지됩니다.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쪽).

(단위: 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기준액×100%

야간12시간 보육료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다음 날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도보육사업안내」, 316쪽).

▪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7쪽).

▪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기준)을 지원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7쪽).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가 지원됩니다.

> ※ 그 밖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5~3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단서).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육서비스 이용권

▪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참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아이행복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3. 24.),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참조].

3. 영유아 보육 지원

3.1. 양육수당

3.1.1.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8쪽).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6쪽).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8쪽).

<table>
<tr><th>연령(개월)</th><th>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농어촌
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d>24 ~ 35</td><td>10만원</td><td>24 ~ 35</td><td>15만6천원</td><td>24 ~ 35</td><td>20만원</td></tr>
<tr><td rowspan="4">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10만원</td><td>36~47</td><td>12만9천원</td><td rowspan="4">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 rowspan="4">10만원</td></tr>
<tr><td>10만원</td><td rowspan="3">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td><td>10만원</td></tr>
<tr><td>10만원</td><td>10만원</td></tr>
<tr><td>10만원</td><td>10만원</td></tr>
</table>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8-32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일시보육 서비스

3.2.1.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2쪽).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2쪽).

※ 다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3.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3.1.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을 권장하는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Td),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1. B형간염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합니다.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합니다.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합니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합니다.

2. 결핵(피내용)

▹ 접종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

√ 생후 15개월18개월(DTaP), 4세6세(DTaP), 11세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다만,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에는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함).

4. 폴리오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다만,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함).

√ 4세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6. 폐렴구균

▹ 접종대상

√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접종을

실시합니다.

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과 4세6세에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9. 수두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10. A형간염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개월23개월에 1차 접종 후, 6개월12개월(또는 6개월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11. 일본뇌염

▹ 접종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 접종을 권장합니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12.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1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다만,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사업 시기 내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다만, 과거 접종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2세 미만 소아는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인부담부분을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육아 근로 지원

3.4.1.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다음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자녀가 소속된 기관(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②「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③「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단서).

※ 사업주는 위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

육아휴직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위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후 복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지급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함)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2항).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합니다.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합니다.

급여의 감액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본문).

-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때에는 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단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2.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

근로시간 변경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기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급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및 제104조의2제1항).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문).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을 2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16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 급여의 감액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동일업무 복귀 등 보장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6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제5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사업주의 육아지원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5. 세제 혜택

3.5.1.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위 규정은 2026. 4. 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2항].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3항].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지급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공제금액

▪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근로자(사용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6. 다자녀 가구 지원

3.6.1.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표 2].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진단서
4.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5. 건강(의료)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소득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위의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1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LH청약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민간공급 다자녀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우대

주택도시기금대출 시 금리 우대

▪ 다자녀가구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금리 및 대출한도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실시하는 각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2.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내용

▪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 다자녀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유료)]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상담전화[☎(국번없이)123]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 같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위 1.의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자동차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 위의 사유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5항).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